營業報告書의 現況과 改善方向

鄭 基 淑*

≪目 次≫

Ⅰ. 問題의 提起와 硏究方法
Ⅱ. 會計理論과 政府規制
Ⅲ. 商法의 位置와 商法上의 公示關係 規定
Ⅳ. 營業報告書의 實態分析
Ⅴ. 日本과 美國의 최근 動向
Ⅵ. 營業報告書의 改善方向

Ⅰ. 問題의 提起와 硏究方法

財務諸表의 기본목적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 데 有用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이다.[1]

최근에는 財務諸表라는 말 대신 財務報告(finacial reporting)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財務報告와 財務諸表는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財務報告 중에서 財務諸表가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財務報告는 財務諸表에 의해서만 傳達되는 情報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더욱 광범위한 것이 일반적이다.[2]

財務報告든 財務諸表든지간에 이것들은 불변의 것이 아니고, 財務報告가 행해지는 그 社會의 經濟的, 法律的, 政治的 및 社會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法律과 規程 등에 의해서 財務報告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經營者가 企業의 外部人에게 財務報告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韓國에서 財務報告라고 하면 商法上 株主에게 제공하는 통칭의 營業報告書, 證券去來法上의 事業說明書, 事業報告書 및 半期報告書 등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경우는 회사의 營業報告書(corporate annual report), 證券關係法에 의해서 證券去來委員會(SEC)에 제출하는 Prospectus, Form 10-K 및 Form 10-Q 등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는 商法上의 營業報告書와 주주총회를 마친 뒤에 주주에게 발송하는 事業報告書, 證券去來法上의 目論見書와 有價證券報告書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啓明大學校 經營大學 敎授

1) AICPA Study Group.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1973), p. 13.

2)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1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Par.5~7.

이들 報告書가 利用者들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면 稀少資源의 합리적 배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3]

美國의 경우도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財務報告를 제공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政府가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財務報告 중에서 商法上의 株式會社 計算書類, 즉 통칭의 營業報告書 (商法上의 株式會社 計算書類에 포함되는 營業報告書가 아닌, 앞으로 營業報告書라 함은 통칭의 營業報告書이고 商法上의 營業報告書를 지칭할 때는 별도 표시가 있음)가 제공하는 정보가 利用者들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目的適合(relevance)하고, 信賴性(reliability)이 있고, 利用者들이 그 報告書의 정보를 理解할 수 있고(understandability), 그 報告書가 適期에 제공되고 있고(timeliness), 그 報告書의 情報들이 比較하여 보는데(comparability) 유용하고, 利用者들이 이들 報告를 용이하게 入手할 수 있는(availability)가를 분석·검토한다.

目的適合性(relevance), 信賴性(reliability), 理解可能性(understandability), 適時性(timeliness), 比較可能性(comparability), 및 入手容易性(availability) 등을 財務報告의 質的特性(qualitative characteristics)이라고 하는데, 財務報告의 정보는 이와 같은 特性이 있어야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는 현행商法의 關係條項들이 營業報告書가 이와 같은 質的特性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가를 규명하고 商法에 모순이 있을 때는 法改正의 당위성을 모색하고 또 株式會社의 經營者들이 작성하고 있는 營業報告書가 商法에 의거해 작성되고 있는가를 분석·검토한다.

현재의 대부분의 營業報告書가 商法의 미비, 經營者들의 기피현상 및 株主들의 무관심으로 質的 特性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 이와 같은 현상들이 稀少資源의 배분에 장애요인이 되고, 資本市場의 정보부재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營業報告書가 質的 特性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는 것을 意思決定모델(decision model)接近法에 의한다[5].

意思決定모델 接近法의 연구가 美國에서는 1950年代부터 시작되었으나 意思決定모델이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 接近法은 1973年 美國公認會計士會의 硏究團에서 "財務諸表의

3) *Ibid.*, Par. 9.

4) Surendras Singhvi, "Corporate Management's Inclination to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Financial Analysts Journal* (July-August 1972), p. 66.

5) 會計의 硏究方法論은 ① Classical Approach ② Decision-Usefulness Approach ③ Information Economic Approach로 분류된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硏究方法은 "意思決定一有用性接近法"인데 이것은 意思決定모델 接近法과 意思決定者(decision makers)接近法으로 나누어지고, 意思決定者 接近法에는 個別利用者 行動(indvidual user behavior) 接近法과 總市場水準硏究方法(aggregate market level research)이 있다.

目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實務界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意思決定모델은 "財務諸表의 기본목적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意思決定모델 接近法에서 취급하는 것은 다양하나, 주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質的 特性을 다룬다. 즉 財務報告書의 정보는 이러한 質的 特性을 가져야 유용하다는 規範的 接近法을 택하는 것이고, 利用者의 行動 側面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만 현행의 營業報告書가 質的 特性을 가지고 있는가를 外國 자료와 비교해서 분석·검토하고 營業報告書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會計理論과 政府規制

政府의 規制가 會計理論의 生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 이것은Watts와 Zimmerman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그들의 說을 소개하고자 한다.[6]

우리들이 財務會計理論이라고 하는 理論은 대부분 處方的인 것이다. 즉 발표되는 財務諸表의 情報內容은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는 規範的인 것에 會計學者들은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반세기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會計實務 또는 會計政策의 수립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處方的인 會計理論은 학자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또 학자들은 財務諸表의 目的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財務諸表의 目的으로부터 각종의 處方들을 유도해 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處方과 제안된 會計方法論들이 모든 회계담당자를 만족시킬 수도 없었고 會計原則을 제정하는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美國會計學會의 최근의 결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하나의 보편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기본적인 會計理論은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7]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것에 따르면 우리들은 會計實務에 대해서 會計理論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Watts와 Zimmerman은 會計理論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

6) Ross L. Watts and Jerald L. Zimmerman, "The Demand for and of Supply of Accounting Theories: The Market for Excuse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79), pp. 273~304, 여기서 "理論"이란 말은 일련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선행되는 原則, 특히 확인되어 온 일련의 假定이란 말 대신에 現存하는 會計理論이라는 일반적 용어로서 理論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7) AAA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for External Report, *Statment on Accounting Theory and Theory Acceptance*, p. 1.

Watts와 Zimmerman의 연구는 기본구조에서 經營學의 原理가 이용되고 있다. 그들은 會計理論을 經濟財로 보고 이들 財의 需要와 供給의 성격을 분석·연구하였다.

현존하는 會計理論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政治過程(political process) 理論의 도움이 필요하다. 政治過程이란 "富의 이전을 하려는 政府의 강압적인 힘에 대해 個人들이 경쟁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각종 會計處理手續도 이러한 이전에 영향을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政治過程에서 경쟁하는 개인들은 그들에게 바람직한 富의 이전에 도움을 주는 會計處理手續을 제공할 理論의 需要者들인 것이다. 이들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會計理論의 合意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政治過程에서 公衆利益(public interest)에 중심을 둔 會計處方들이 나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個人들은 公衆利益에 기초를 둔 處方을 만드는 規範的 會計理論을 수요하게 되는 것이다. 公衆利益에 기초를 둔 會計理論은 政府의 역할에 의존하게 된다.

1. 會計理論의 需要

1) 非規制經濟體制에 있어서의 會計理論의 需要

(1) 非規制經濟體制에 있어서의 會計

政府가 규제하기 전에도 企業은 자발적으로 監査받은 財務諸表를 작성하였다.[8] Watts는 政府가 규제하지 않은 시대에도 會社의 發起人이나 經營者들이 감사된 財務諸表를 供給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發起人과 經營者들이 財務諸表를 供給하겠다는 협정을 會社의 定款에 포함시키고, 또 會計와 與信者 사이의 貸付契約書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契約이 發起人이나 經營者가 부담해야 할 代理人費用(agency costs)을 감소시키고 發起人이나 經營者의 福利를 증대시킨다.

代理人費用은 代理人 즉 經營者의 利益이 株主와 債權者의 利益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株主인 經營者가 會社의 資產을 배당으로 과다하게 사용한다면 債權者는 빈껍질의 會社에 대한 債權의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經營者가 株主와 債權者를 희생시키고 그 자신의 특별 수당 등으로 회사의 資產을 사용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債權者와 株主는 經營者의 行動을 예측하고 社債와 株式의 價格을 발행시에 할인을 할려고 한다. 그래서 發起人이나 經營者는 社債와 株式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8) George J. Benston, "The value of the SEC's Accounting Disclosure Requirements,"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9), pp. 515~532. 1926年에 뉴욕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모든 회사가 貸借對照表 발행, 55%는 賣出額 公示, 45%가 賣出原價公示, 71%가 減價償却公示, 100%가 純利益公示, 82%가 公認會計士의 감사를 받았다

費用도 代理人 費用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Watts의 代理人 關係의 분석에 의하면 非規制된 經濟體制에 있어서 監査된 財務諸表의 기능은 代理人費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때의 會計實務(外部報告書의 형식, 내용, 빈도 등)는 代理人費用의 성질과 크기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였다.

(2) 會計理論의 機能

i) 敎育的 需要 : 이 당시의 會計處理들은 계약에 의해 代理人 費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 費用에 의한 會計處理의 다양화는 會計實務 敎育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래서 會計學 敎授들도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무를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19세기의 會計學 敎科書와 論文들은 實務의 복잡다양한 것을 인식하고, 복잡다양한 것에서 일반적 경향을 찾으려고 하였다.

ii) 情報的 需要 : 經營者와 監査人은 訴訟때문에 會計處理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會計理論의 需要를 하게 되었다. 監査人은 경영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株主 또는 債權者와 계약을 체결하고 會社定款에 있는 여러 가지 契約條項들에 대한 經營者의 이행 여부를 발견하며, 監査人이 발견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監査人이 法的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므로 監査人은 經營者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會計理論을 필요로 하게 되며, 여러 가지 會計處理 手續 중에서 경영자가 행한 방법의 선택이 代理人費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代理人費用이 會計處理手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예측하는데 會計理論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情報的인 측면에서의 會計論理에 대한 需要라고 한다.

iii) 正當化를 위한 需要 : 초기의 會計學 敎科書들은 經營者가 株主를 희생시키고 그들 자신의 利益을 위해서 會計理論을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당시의 經營者들은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의 정의가 미비된 것을 이용하여 利益을 과대계상하였다. 이리하여 株主와 債權者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 당시의 敎科書와 理論은 經營者가 어떻게 利益을 조작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 監査人은 經營者와 논쟁을 하기 위해서 會計理論을 필요로 하였다. 즉 監査人은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會計理論을 필요로 하였다.

2) 規制된 經濟體制에 있어서 會計理論의 需要

(1) 會計와 政治過程

政府의 補助金制度, 關稅制度, 厚生과 社會保障制度 뿐만 아니라 각종 規制機關들도 富를 이전시키는 전형적인 法律에 따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企業은 富의 이전의 원천(稅金

合併禁止法 등)이기도 하면서 富의 이전의 수계자(세금공제제도, 관세환급제도, 각종 보조금제도 등)가 되기도 한다.

財務諸表는 富 이전의 중심역할을 하고, 政治過程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SEC는 財務諸表의 내용을 직접 규제하고(資產再評價利益을 인정하지 않는 것, 財務狀態變動表의 작성요구 등), 聯邦所得稅法(Federal Revenue Acts)도 財務諸表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 각종 規制委員會(洲公共事業委員會, 銀行과 保險委員會, 洲間商業委員會 등)도 때때로 財務諸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직접 영향 외에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 즉 政府의 각종 委員會는 公共料金의 결정, 企業合併禁止 등의 규제과정에서 財務諸表의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때로는 國會가 立法할 때 財務諸表의 정보에 의존하기도 한다. 따라서 公益事業의 경영자와 政府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產業(保險會社, 銀行, 運輸業 등)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會計原則의 제정을 위해 規制機關은 말할 것도 없고 企業會計原則委員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와 財務會計基準審議委員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 까지도 로비활동을 한다.

(2) 會計理論 需要와 政府干涉의 影響

企業에 대한 政府의 規制는 敎育的인 면에서, 情報的인 면에서 會計理論의 需要를 증대시키고 있다.

美國의 政治過程은 어떤 案에 대한 支持行爲(advocacy proceeding)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立法의 찬성자와 반대자들은 그들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會計處理手續의 변경을 가지오는 것이라면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justifiation) 또는 "辨明"(excuses)을 하기 위해서 會計理論이 필요하게 된다. 어떤 하나의 方案을 지지하는 행위의 基本目標는 "公衆利益"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公衆利益에 목표를 둠으로써 個人이나 특정 集團의 利益에만 국한되는 주장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規制되지 않는 自由競爭市場의 原理는 非效率的이라는 관점에서 公衆利益의 개념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自由競爭市場의 붕괴가 政府의 간섭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다는 論理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i) 公衆利益과 自由競爭市場의 崩壞

1929年의 뉴욕證卷市場의 붕괴는 정부간섭의 계기가 된 것이며 1933年의 證卷法과 1934年의 證卷去來法이 그 例이다.

政治家와 官僚들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公衆利益"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

다. 前 SEC의 主任 會計士인 John Burt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그의 임기 동안에 제정된 각종의 公示規制들을 옹호하고 정당화하였다.[9]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公示規制들이 效率的 資本市場에 더욱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 우리가 성취된 것이라고 희망하는 그 方法은 첫째, 投資家들이 전반적인 情報를 얻고 있다는 信念을 投資家들에게 줌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둘째로 더 좋은 分析道具의 발전을 조장하고, 그리고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職業的인 分析家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그들에게 더 좋은 資料를 줌으로써 더 유능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더욱 效率的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政府의 規制는 "公衆利益"의 개념을 이용한 規範的 會計理論의 수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資本市場이 더욱 效率的일수록 投資家들이 더욱 좋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會計處理手續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理論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理論은 유일무이한 理論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다양한 處方案들이라고 할 수 있다.

ii) 合理性과 "理論幻想"

最近까지 政治家, 선거에 의한 公務員 및 관료는 "公衆利益"을 위해서 行動한다는 것이 經濟學에 있어서 통설이라라고 한다. 어떠한 行動이 "公衆利益"을 위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政治家들은 여러 가지 行動 중 어느 하나의 行動結果를 예측하는 理論을 필요로 하게 된다. "合理"와 "公衆利益" 指向的인 政治家와 관료는 最上의 예측을 할 수 있는 理論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例, "最上"의 理論)[10] 이와 같은 理論이 우월한 理論이 될 것이다. 公衆利益의 命題에 기반을 둔 硏究物들은 美國會計學會의 ASOBAT(1966, p. 5), 美國公認會計士會의 Trueblood Report(1973. p. 17), Gonedes와 Dopuch, Beaver와 Demski의 "最上"의 理論들이다.

最近에 와서 經濟學者들은 公衆利益이 관찰된 현상과 首尾一貫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個人들이 政治過程에서 그들 자신의 利益을 위해서 行動한다는 또 다른 假定(個人利益指向의 假定)을 經濟學者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假定은 "公衆利益"의 假定에 기반을 둔 것 보다 관찰된 현상과 더욱 首尾一貫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政治行動 費用의 요인이 고려되는데, 政治行動의 "去來費用"의 크기가 문제되는 것이다. 政治行動의 費用이 많이 요구된다면 政府의 公務員들은 반드시 公衆利益을 위

9) John C. Burton, "An Interview with John C. Burton", *Management Accounting*, (May, 1975) pp. 19~23.

10) "最上(best)"의 理論이라 함은 관찰현상과 首尾一貫된 理論을 의미한다. 이러한 理論은 公務員이 그들의 行動의 結果를 예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따라서 그들은 社會福祉를 증대시킬 行動의 선택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해서 행동한다고 볼 수 없다. 公務員은 자기를 위해 어느 특정집단이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그 집단을 위해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政治費用이 적게 또는 거의 消費되지 않는다면 公衆利益을 위해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政治費用이 많이 소비되었다면 "最上"의 理論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적게 소비되었다면 "最上"의 理論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높은 政治費用의 假定은 Watts와 Zimmerman의 理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會計理論의 供給

會計學者들은 그들 自身이 規範的 會計理論(例, 對替原價 歷史的 原價 等)의 專門的인 비판가 또는 옹호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會計理論은 會計實務와 會計基準을 결정하는데 使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會計學者들은 對替的인 會計處理手段의 장단점을 論理的 客觀的으로 決定한다고 한다. 즉 Ijiri는 會計學者들은 會計實務와 주위환경의 과학적 관찰자이며 會計理論은 고도의 客觀性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會計理論의 가장 중요한 目標는 건전한 會計實務의 評價와 發展을 위한 一般的 準據(general frame of reference)가 될 首尾一貫된 일련의 논리적 원칙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11] 會計學者들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상태는 存在하지도 않고, 또 經營者, 監査人과 政治家들은 會計學者들에게 會計基準의 제정을 맡기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대개의 會計學者들은 그들의 硏究와 理論이 궁극적으로 會計實務를 개선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理論이 "변명"을 위해 存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Watts와 Zimmerman은 오늘날의 會計理論 需要는 會計處理手續을 "正當化"(justification)하기 위해서 즉 "변명"을 하기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즉 需要者의 會計處理手續을 "正當化" 또는 "변명"하기 위해서 會計學者들은 理論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3. 政府干涉과 會計理論과의 관계에 대한 實證的 分析

"변명"을 위한 理論의 需要가 會計學者들의 硏究에 重要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會計實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法이 제정되었을 때 會計理論의 變化를 Watts와 Zimmerman은 관찰하였다. 그들은 몇 개의 중요한 立法에 의해서 會計實務와 理論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를 分析·檢討하였다. 會計理論에 결과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鐵道產業規制法, 所得稅法, 證券法 등과 會計理論의 生成과의 관계를 分析·檢討하였다.

1) 鐵道關係法

11) Eldon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3rd ed. (1977), p. 1

鐵道産業의 成長은 會計理論의 發展에 重要한 影響을 주었다는 것을 會計學者들은 인정하고 있다. Hendriksen은 1800年에서 1930年까지 鐵道産業이 會計理論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要因 中의 하나라고 한다.[12]

Littleton은 減價償却會計의 發展과 19세기의 鐵道産業에 있어서 減價償却費에 관한 研究를 하였다.[13] 19세기에 美國과 英國의 鐵道産業에서 減價償却費의 會計理論이 發展되었는데 Watts와 Zimmerman의 관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는 왜 減價償却費에 대한 논쟁이 鐵道産業에서 일어났는가이고, 둘째는 政府의 規制 또는 政治的 行動이 減價償却費에 관한 研究에 선행되었는가이다.

(1) 論爭의 理由

論爭의 理由는 Littleton에 의해서 研究되었다. 그는 減價償却에 대한 論爭에는 두 가지 理由가 있는데 無限責任會社의 생성과 企業이 耐久性資産을 가지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無限責任이 利益配當의 제한을 하는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減價償却會計의 必要條件이라 하였다. 그리고 耐久性 資産이 없었다면 利益計算을 위해 減價償却을 고려할 必要가 없다고 말하였다.

Watts와 Zimmerman은 Littleton의 分析이 不完全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첫째 負債와 資本의 代理人費用은 無限責任會社가 存在하든 存在하지 않든간에 발생하고, 無限責任은 단지 危險의 변동만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였다. 配當契約은 負債의 代理人費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英國에서 無限責任制度가 일반적으로 認識되기 전인 1620年代에 配當契約制度를 發見할 수 있다. Littleton이 減價償却會計의 理由를 無限責任制度에서 찾는다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할 수 있고 減價償却會計問題의 대두는 配當契約制度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配當契約과 耐久性資産이 必然的으로 減價償却을 費用으로 處理하는 理由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까지는 減價償却을 費用으로 處理한 것을 發見할 수 없다.

결국, 減價償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鐵道産業에 대한 운임과 요금을 政府가 規制하면서부터라고 한다. 政府가 요금을 規制하면서부터 減價償却을 費用으로 處理하게 되었다.

(2) 論爭의 時期

政治的 行爲(political action)가 會計理論을 생성케 하였고, 그 逆은 아니라는 것이다. 1930年代의 美國의 鐵道憲章(Railroad Charters)은 鐵道産業의 利益規制 條項이 包含되어 있고 이 때문에 減價償却費를 費用으로 處理하게 되었다. 이 鐵道憲章은 減價償却費에 대한

12) *Ibid.*, p. 40.
13) A.C.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1933), reprinted by Rusell, (1966). pp. 239~241.

論爭보다 앞선 것이다. 英國도 美國과 같은 현상이라 한다.

2) 所得稅法

財務報告實務에 대한 所得稅法의 影響은 지대한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世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Saliers는 1913年의 所得稅法(Income Tax Law)의 前身인 稅法(Exercise Tax Law)의 影響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4]

"稅法(Exercise Tax Law)이 제정된 年度인 1909年에는 減價償却費를 計上하는 企業이 많았다. 이 法은 $5,000 以上의 純利益을 낸 會社에 대해서는 1%의 稅金을 부과하였다. 이 때의 純利益은 總利益(gross profit)에서 經常的인 費用과 減價償却充當金을 包含한 모든 損失을 差減한 後의 殘額이다. 減價償却費는 이 稅法의 影響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費用으로 處理되게 되었다."

Storey는 이 稅法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5] "實現主義槪念(realization concept)은 第1次 世界大戰 이전에는 전혀 存在하지 않았다. 實現主義槪念의 公式的인 說明은 1932年 뉴욕증권거래소의 株式上場委員會(Stock List Committee)와 美國公認會計士會의 證券去來所 特別協力委員會와의 왕복 書信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書信의 內容은 賣出利益의 認識을 賣出時點에서 認識하는 것이고 會計期間의 期初와 期末의 資產의 在庫調査에 의해 利益을 認識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利益을 認識하게 된 것은 所得稅訴訟에 대한 法院의 판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證券法

1933年의 證券法과 1934年의 證券去來法은 會計學에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첫째로는 會計의 目的의 變化이다. 즉 情報指向의 會計學으로의 그 目的의 變化이다. 둘째로는 會計原則의 연구에 자극을 준 것이다.

(1) 情報目的

證券法 以前의 會計學者들은 多目的會計(multiple objectivess)에 대한 여러 가지 處方案을 說明하고, 多數의 利用法을 열거하고 있다. 非規制된 經濟體制에 있어서 會計의 目的은 主로 統制와 受託管理(stewardship)의 역할이 강조되었다.[16]

Leake는 損益計算의 理由를 네 가지로 區分하고 있다. ①經營者受託管理役割, ②資本과 勞動 사이의 利益의 配分計劃, ③所得稅, ④ 公益事業의 規制

14) Earl A. Sailers, *Depreci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3rd ed., (1939), pp. 17~18.
15) Reed K.Storey, "Revenue Realization, Going Concern and Measurement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56), pp. 232~238.
16) Watts and Zimmerman, *op. cit.*, p. 299.

Daines는 會計의 主目的을 配當에 利用할 수 있는 利益의 計算이라고 하였고, Sweeney는 會計의 基本目的은 資本과 利益을 區分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Paton은 經營者가 合理的 經營管理를 하는데 會計資料를 利用하기 때문에 經營者가 主利用者라고 하였다.

證券法 以後 投資者와 與信者가 合理的 投資選擇決定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情報를 提供한다는 것이 會計의 主目的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情報目的 會計라고 한다. 이에 대한 研究는 1936年 美國會計學會의 "Tentative Statement on Accounting Principles",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ng", FASB의 "Conceptual Framework Study" 등이다.

(2) 會計原則에 관한 研究

證券法 前에는 會計의 研究가 대부분 實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각종의 處方案들은 통상 實務를 合理化하는 데 있었다. 1920年代의 Sweeney의 物價水準變動會計도 實務에 基礎를 두고 있다. 다만 Paton과 Canning같은 例外의 學者도 있다. Chambers는 Paton을 除外하고 第2次世界大戰 以後까지 會計學에 있어서 누구의 研究에도 理論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Canning은 會計擔當者는 利益에 대하여 完全한 哲學的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또 그들은 그와같은 思考의 必要性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징조도 없다고 하였다. Paton과 Canning이 1920年代의 정통과 會計思想과 다른 理由는 아마 그들이 博士學位論文을 經濟學科에서 썼기 때문일 것이다.

Paton과 Canning이 會計思想의 變化를 시킨 선구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1920年代의 정통파의 견해를 變化시켰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Canning과 Paton의 견해가 그들의 經濟學의 教育에 의한 異常見解이라면 그들이 會計學界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見解를 정통파의 見解쪽으로 수정하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Zeff에 의하면, 1920年代와 1930年代에 정통파의 見解가 Paton 쪽으로 움직였다기 보다는 Paton의 見解가 정통파의 見解 쪽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Paton과 Canning이 證券法이 통과 되는 데 影響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公示要求가 "公衆利益"을 위해서 必要하다는 論理 위에 證券法의 存在理由가 있는 것이다. 즉 公示制度가 없이는 資本市場이 效率的일 수 없다는 것이다.

Zeff에 의하면 Accounting Series Release No.4 (U.S. SEC, ASR No.4)에 의해서 SEC는 會計原則 樹立의 責任을 民間機關에 위임하고, SEC는 이 民間機關을 統制하고 있는 것이다. SEC의 會計原則을 "公衆利益"에 基礎를 두고 있기 때문에, SEC는 現存하는 實務와 거

리가 먼 會計原則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SEC의 ASR No.4의 發表 以後, 實質的이고 권위있는 支持(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를 받는 會計原則의 樹立을 위하여 Scott, Wilcox와 Hassler, Kester 등이 會計原則에 관한 論議를 하기 시작하였다.

Wetts와 Zimmerman의 實證的 分析에 의하면, 會計理論의 주류(例, 減價償却槪念, 發生主義會計, 經濟的 利益槪念의 適用, 財務諸表의 目的은 代理人費用을 統制하기보다는 投資者에게 情報를 提供하는 것 등)는 政府간섭을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4. Watts와 Zimmerman의 見解의 吟味

Watts와 Zimmerman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현대 會計學에 있어서 規範理論(例, 現在價値會計理論)이 아닌 다른 어떠한 理論도 모든 會計基準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① 會計基準은 그 基準에 의해서 편익을 받는 특정 이해관계자를 변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② 특정 이해관계자는 相異한 문제점에 대하여 相異한 理論(또는 변명)을 사용하고 있다.

③ 이해관계자는 서로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利己的 動機中心의 會計理論(self-interest theory)은 會計基準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理論은 公衆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會計基準을 正當化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會計基準을 정당화하는 一般的으로 인정되는 회계이론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의 유일한 회계이론도 있을 수 없다. 公衆利益에 目標를 둔 會計基準도 政治過程에서 發生하는 政治費用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美國의 현실인 것 같다.

Watts와 Zimmerman의 견해는 상당히 지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韓國의 政治過程은 美國의 政治過程과 상당히 다르고 韓國은 美國의 政治過程보다는 덜 정교하기 때문에 法의 規定과 政府의 規制가 느슨하기 쉽다. 이 때문에 특정 이해관계자들 즉 大企業의 株主 또는 경영자들이 法의 規定과 政府規制의 느슨함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利益追求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韓國의 會計理論家는 美國의 경우와 입장이 다소 다른 것 같다. 美國의 會計理論家는 會計理論의 需要側의 입장을 正當化 또 변명하기 위해서 理論을 供給하고 있으나 韓國의 경우는 會計理論家들이 先進諸國의 理論과 實務를 現地에 유학 또는 文獻 등에 의해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들 理論과 實務를 公示關係規制法을 제정할 때 제공할 수 있다. 公示關係規制法을 제정할 때 會計理論家는 적극 참여하여 公衆利益에 중점을 둔 規制法 제정에 도움

을 주어야 한다.

III. 商法의 位置와 商法上의 公示關係 規定

1. 商法의 位置

商法은 企業에 관한 一般法으로서의 位置를 가지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企業規模의 확대와 企業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商法이 단순히 債權者를 보호하기 위해서 資產을 평가하고 商業帳簿를 두고 計算書類를 작성한다고 하는 생각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商法을 전반적으로 보면 私人間의 이익 조정의 입장에서 이미 有價證券을 소유하고 있는 者에 중점을 둔 規定을 하고 있는데 反하여, 證券去來法은 현재의 投資者와 장래의 投資者 등 광범위한 大衆을 상대로 하여 제정된 法이다. 때문에 商法과 證券去來法의 基本理念은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 그러나 商法과 證券去來法이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 없고, 證券去來法은 銀行法과 保險業法 등과 같이 國家의 行政的인 감독과 보호규제를 반영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商法의 기본이념과 다른 정책적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2. 商法의 公示關係 條項

1) 計算書類의 作成

(1) 현행條項

商法 第447條의 ①項에 의하면, 理事는 定期株主總會日의 2週間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財產目錄 ② 貸借對照表 ③ 營業報告書 ④ 損益計算書 ⑤ 準備金과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關한 議案

②項에 의하면 前項 第1號의 財產目錄은 貸借對照表 附屬明細書로서 갈음할 수 있다. "株式會社의 計算書類 等에 관한 規程"의 計算書類作成에 관계되는 條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條 "目的"에서 財產目錄, 貸借對照表, 營業報告書, 損益計算書 및 準備金과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한 議案과 計算書類附屬明細書의 標準書式 및 기재방법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

第2條에서 計算書類와 計算書類附屬明細書의 표준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하여 이 令에 규

17) 監査法人 中央會計事務所, 財務內容開示全書 (1978), p. 3.

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第9條에서 회사는 대차대조표관계 부속명세서로서 유가증권명세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고정자산처분명세서, 무형고정자산처분명세서, 관계회사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社債명세서, 장기차입금명세서, 담보권설정명세서, 이사 감사 및 주주와의 거래명세서, 자본금명세서 및 준비금명세서에 관하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改正試案

計算書類의 작성에 관한 第447條의 改正案은 다음과 같다.[18]

第①項에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7週間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영업보고서 ④ 준비금과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 의안

第②項에서 전항의 제1호,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부속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株式會社의 計算書類등에 관한 規程"의 試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 計算書類의 備置 및 公示

商法 第448條의 제①항은 理事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前條에 揭記한 서류와 監事의 의견서를 本店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②항은 株主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前項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定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商法 제465조의 제①항은 理事는 決算期마다 결산기로부터 4月내에 제447조 제①항에 기재한 서류의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②항은 전항의 서류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특히 자본과 준비금의 증감, 이사·감사 및 주주와의 거래, 담보권의 설정, 금융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금전의 대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과 고정자산의 처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③항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①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商法 제449조의 제①항은 理事는 제447조에 게기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②항은 理事는 전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

18)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硏究센터, 商法改正試案 및 意見書, (1975), p. 105.

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計算書類의 備置·公示에 대한 決定試案은 다음과 같다.

제448조의 제1항을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의 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로 바꾸었다.

韓國의 商法은 1962年 依用商法이 改正된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1960年代와 1970年代의 經濟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시급히 商法이 개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商法改正試案은 너무 문제가 많으며, 가혹히 표현한다면 개정시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IV. 營業報告書의 實態分析

1. 資料의 選擇

1) 標本의 選擇

1980年 9月 10日 현재 上場法人 352個 會社를 種目別로 나열하여 일련번호를 붙여서 亂數表를 이용하여 60個會社를 선택하였다.

營業報告書의 實態分析을 上場法人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上場法人은 일반적으로 企業의 규모가 크고 또 각종 報告書類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② 營業報告書를 입수하기 위해서 개별 企業에 서신을 보냈으나 잘 보내 주지 않는다.

③ 上場法人은 證券去來委員會에 事業報告書를 제출하는데, 대부분의 上場法人이 事業報告書에 營業報告書를 첨부서류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證券監督院 公示室에 비치되어 있는 事業報告書에 첨부 되어 있는 營業報告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標本會社의 會計年度

標本會社의 有用한 資料의 會計年度의 分布는 다음과 같다.

會計年度	1979. 1. 1 1979. 12. 31	1978. 10. 1 1979. 9. 30	1979. 3. 1 1980. 8. 29	1979. 4. 1 1980. 3. 31	1979. 7. 1 1980. 6. 30	計
會社數	54	1	1	2	2	60
比率	90.0%	1.7%	1.7%	3.3%	3.3%	100%

3) 分析對象이 된 실제 標本會社數

數證券去來法上 證券去來委員會에 제출하는 事業報告書에 株主에게 보내는 決算書類인 營業報告書와 決算報告書를 첨부한 회사의 수는 다음과 같은데, 이 36개 회사의 決算報告書

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區 分 \ 決算書類의 名稱	營業報告書	決算報告書
會社數	22	14

2. 營業報告書의 分析

1) 一般的 內容의 分析

商法 第447條 및 第449條, 上場法人 財務管理規定 第5條에 의해 株主總會에 제출하여야 할 書類

區 分 \ 法定書類	財産目錄					B/S	I/S	商法上의 營業報告書
	財産目錄	B/S 附屬書類	其他	없음	計			
營業報告書提出會社數	15	6	—	1	22	22	22	22
決算報告書提出會社數	8	3	1	2	14	14	14	14
營業報告書提出會社(比率)	68.2	27.3	—	4.5	100.0	100.0	100.0	100.0
決算報告書提出會社(比率)	57.1	21.4	7.1	14.3	100.0	100.0	100.0	100.0
計	23 (63.9)	9 (25.0)	1 (2.8)	3 (8.3)	36 (100)	36 (100)	36 (100)	36 (100)

區 分 \ 法定書類	準備金과 利益이나 利子의 배당에 관한 議案				監査意見書			C P A 監査意見書		
	準利子의 배당에 관한 의안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案)	其他	計	表示	없음	計	表示	없음	計
營業報告書提出會社數	4	17	1	22	22	0	22	21	1	22
決算報告書提出會社數	2	11	1	14	8	6	14	8	6	14
營業報告書提出會社(比率)	18.2	77.3	4.5	100.0	100.0	—	100.0	95.5	4.5	100.0
決算報告書提出會社(比率)	14.3	78.6	7.1	100.0	57.0	42.9	100.0	57.1	42.9	100.0
計	6 (16.7)	28 (77.8)	2 (5.5)	36 (100)	30 (83.3)	6 (16.7)	36 (100)	29 (80.6)	7 (19.4)	36 (100)

※比較貸借對照表과 比較損益計算書를 作成한 會社는 없다.

2) 財産目錄을 附屬明細書로 갈음한 9個會社의 作成內容 分析(問題가 있는 附屬明細書만 발췌)

作成對象會社(A)의 선정은 公認會計士의 監査報告書 등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區 分 \ 附屬書類	固定資産處分明細書	社債明細書	擔保提供明細書	理事·監事 및 株主와의 去來	原價計算明細書	減價償却明細	修繕費明細書	備考
作成對象會社(A)	9	8	資料없음	9	9	9	9	
作成會社(B)	5	7	0	0	7	5	4	
作成比率(B/A×100)	55.6%	87.5%	0	0	77.8%	55.6%	44.4%	

3) 財務諸表에 관한 追加的 分析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4) 商法上의 營業報告書에 관한 追加的 分析

(1) 一般的 分析

區分	1. 營業의 槪要	2. 營業所의 명칭·위치·增減			3. 株主總會에 關한 事項	4. 資本金	5. 準備金	6. 其他
		명칭	위치	增減				
作成會社數	36	10	10	2	32	24	2	25
作成比率 %	100.0	27.8	27.8	0.6	88.9	66.7	0.6	69.4

(2) 營業의 槪要에 나타난 內容

i) 當期實績의 表示

區分	表示內容							表示方法			
	內外國總	生産	販賣	收益	投資設備	多樣化	R&D	區分表示	金額또는數量	比率	金額比率동시
會社數	36	21	34	23	10	7	5	20	5	8	23
비율 %	100	58.3	94.4	63.9	27.8	19.4	13.9	55.6	13.9	22.2	63.9

ii) 會社 연혁의 表示 : 11個 會社(30.6%)

iii) 次期計劃의 表示

區分	表示期間		表示內容							表示方法			
	次期	中·長期	一般內容	賣出	利益	生産	R&D	多樣化	投資	區分表示	金額또는數量	比率	동시表示
會社數	36	1	22	12	7	2	3	2	5	9	6	2	4
比率 %	100	0.3	61.1	3.33	19.4	0.6	8.3	0.6	13.9	25.0	16.7	0.6	11.1

iv) 圖表를 利用한 會社 : 7個 會社(19.4%)

(3) 一般的 分析(1)의 其他 項目의 追加分析

區分	題目			內容			
	庶務事項	登記事項	其他	登記	주주총회 동시表示	資産再評價	其他
會社數	12	10	3	22	5	1	3
比率 %*	48.0	40.0	12.0	88.0	20.0	4.0	12.0

* 비율은 會社數/25임

5) 其他 情報의 公示에 關한 分析

區分	後發事項	評價方法		株式案內	株式의 分布			株價및去來量推移	增資
		資産	減價償却		所有者別	株式數別	地域別		
對象會社數	32	36	36	36	36	36	36	36	10
作成會社數	0	1	15	12	12	8	2	1	3
比率	0	2.8	41.7	33.3	33.3	22.2	0.6	2.8	30.0

對象會社數는 公認會計士의 監査報告書를 참조하였다.

6) 營業報告書 作成會社 中 財産目錄 作成會社(15個)의 附屬明細書 作成內容

가. 附屬明細書 없음 11個 會社(73.3%)

附屬明細書 있음 4個 會社(26.7%)

나. 作成內容

會社數	附屬明細書
1	關係會社出資金, 貸與金, 現金預金, 賣出債權, 在庫資産, 其他流動資産, 移延資産, 買入債務, 其他流動負債, 賣出額, 資金運用表, 法人稅 등
2	有價證券, 關係會社有價證券, 減價償却
3	無形固定資産, 長期借入金, 準備金, 原價計算
4	有形固定資産

7) 註記 및 註釋의 表示

對象會社(36社) 중 註記와 註釋을 표시한 會社는 1個會社인데, 그것도 資産評價方法, 擔保事項, 附保事項 뿐이다.

V. 日本과 美國의 최근 動向

1. 日本

日本은 法務省 民事局參事官室에서 1977年에 "株式制度에 관한 改正試案", 1978年에 "機關에 관한 改正試案", 1979年 12月에 "株式會社의 計算 公開에 관한 改正試案"을 發表하였고, 各界의 意見을 調整하고 있다.

"株式會社의 計算 公開에 관한 改正試案"의 骨子는 다음과 같다.[19]

1) 營業報告書의 기재사항의 法定

現行의 商法上의 營業報告書를 業務報告書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통칭 사용되고 있는 營業報告書와 商法規定上의 營業報告書와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改正試案은 業務報告書의 기재사항을 法務省令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19) 神崎克郎, 商法上の會計開示制度の擴充企業會計(1980, 4), pp. 56~62.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會計方針, 子會社情報, 大株主情報, 過去年의 營業成績의 比較, 任員의 數와 報酬總額, 無償으로 제공한 금액의 총액, 業務의 상황과 장래 전망에 대한 檢討 결과 및 기타 業務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試案은 從業員의 數와 給與額, 公害防止 및 消費者 保護 등의 事項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중요한 會計方針은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의 註釋事項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2) 半期報告의 導入

1971年 日本 證券去來法의 改正 이래 上場法人에는 半期報告制度를 도입하였으나, 非上場法人은 半期報告制度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商法의 적용을 받는 株式會社는 이 試案이 통과되면 半期報告를 하여야 한다.

3) 聯結公示의 導入

改正試案은 會計監査人의 감사를 요하는 會社의 代表理事는 매결산기에 聯結貸借對照表와 聯結損益計算書를 작성하여 株主에게 송부한다로 되어 있다. 이 改正試案은 商法上의 聯結公示를 당분간은 證券去來法의 규정에 의하여 聯結財務諸表의 제출을 의무로 하는 會社에 限定하고 있다.

4) 公示方法의 확충

改正試案은 商法의 定期的인 公示方法으로 다음 네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①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業務報告書 및 監査報告書의 등본을 주주에게 送付

②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業務報告書, 附屬明細書 및 監査報告書를 會社의 本店에서 公開

③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의 要旨 公告

④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業務報告書 및 附屬明細書의 商業登記所에서 公示

①은 株主에 대한 公示方法이고 ②는 株主와 會社債權者에 대한 公示方法이고, ③과 ④는 一般公衆에 대한 公示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公示方法을 확충한 것은 현행 日本 商法의 모순을 除去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순은 韓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日本 商法은 내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부속명세서 및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이들의 열람을 株主와 債權者에 한정하고 있다. 株主와 債權者에게 있어서도 會社가 그들의 열람권을 거부할 때는 法院의 명령을 얻어야만 열람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는 書類 열람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會社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株主와 債權者의 貸借貸照表 등의 열람청구를 거부할 때는 代表理事는 過料의 처분을 받게된다. 현실

적으로 이 과료의 제재는 열람청구의 거부를 저지할 만큼의 위력이 없다고 한다.

商業登證所 또는 會社登證所에서 대차대조표 등의 公示는 英國 會社法, 불란서 會社法 및 獨逸 會社法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2. 美國

委任狀報告書에 관계되는 規則의 規定에 의해서 SEC는 株主에게 보내는 會社의 年次報告書(corporate annual reports)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20] 이 規則의 改正理由는 첫째, 年次報告書의 形式은 經營者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이 報告書上의 情報를 더욱 의미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SEC에 提出되는 더욱 기술적인 Form 10—K와 Form 12—K를 보급시키기 위한 것이다.

1974年 12月 10日 이후의 會社의 年次報告書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① 지난 2事業年度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② 지난 5事業年度의 영업활동의 요약과 이에 대한 경영자의 分析

③ 영업의 개황

④ 지난 5事業年度의 產業別 또는 地域別 情報

⑤ 任員의 성명, 지위 및 주요 간부의 신상명세

⑥ 會社의 證券이 去來되는 증권시장의 명칭

⑦ 최근 2事業年度에 대하여 四分期別의 증권의 가격과 配當額

그리고 이 規則의 改正으로 株主는 무료로 Form 10—K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日本과 美國에서는 株主에 공여하는 營業報告書[21]와 規制機關에 提出하는 報告書上의 情報는 同一內容의 것을 기재하도록 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株主에게 공여하는 보고서는 會社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形式과 規格이 반드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회사의 P.R.用으로 사용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3. 外國의 事例

(1) 日本은 株主總會召集通知書에 添附되는 營業報告書는 韓國의 통칭 營業報告書와는 다르며, 新日本製鐵의 1977年 營業報告書는 다음과 같다.[23]

① 表題 : 營業報告書

---

20) K. Fred Skousen, *An Introduction To The SEC* (1976), p. 55., 1934年 證券去來法의 규칙 14 a—3, 14c—3, 14c—7참조.

21) 韓國은 통칭 營業報告書 또는 決算報告書라고 하고, 日本은 事業報告書라고 하고, 美國은 Corporate Annual Report라고 한다.

22) Herbert E.Meyer, "Annual Reports Get," *Fortune* (May 7, 1979),

23) 監査法人 中央會計事務所, 前揭書, p. 147.

② 營業의 槪況

③ 生產實績의 推移：5事業年度

④ 當期에 완성된 主要設備

⑤ 販賣實績：5事業年度

⑥ 原料：鐵鑛石 및 原料炭의 購入處別 數量과 金額

⑦ 從業員狀況

⑧ 庶務事項

⑨ 株式事項

이 報告書의 분량은 6페이지이다.

(2) 日本의 事業報告書는 韓國의 통칭 營業報告書와 같은 것이며 株主總會 終了日 後 株主에게 發送하는 報告書이다.

도요다自動車工業株式會社의 第75期(1978年 7月 1日～1979年 6月 30日)의 事業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表紙：第75期 事業報告書

② 代表理社長의 人事

③ 營業의 槪況：圖表를 사용하여 過去 5년간의 販賣數量, 賣出 및 利益의 推移를 表示하고 國內市場 占有率도 圖表로 표시하고 있다.

④ 주요한 토픽：연료절약, 安全對策에 중점을 둔 신제품 개발에 관한 것, 輸出累計 1,000萬臺 돌파의 표시, 기술개발 및 생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施設의 充實, 海外 各國에서 그 나라의 施策에 대한 對策樹立 및 社會協力 活動의 적극적인 전개 등을 기술하고 있다.

⑤ 財務諸表：要約貸借對照表, 要約損益計算書 및 利益金處分計算書를 2事業年度 比較해서 작성하고 간단히 註釋을 첨부하였다.

⑥ 庶務狀況：定期株主總會, 登記事項 및 庶務事項은 약술하고 있다.

⑦ 株式狀況：大株主, 株式의 發行關係 및 期中의 名義改書에 관한 事項을 기술하고 있다.

⑧ 任員：34名의 任員의 명단과 會計監査法人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다.

⑨ 最近 10期間의 業績의 推移：10事業年度의 販賣臺數, 輸出臺數, 賣出額, 稅後利益, 1株當의 배당금, 총자산, 資本金, 株主 및 從業員數의 推移를 기재하고 있다.

⑩ 株主메모：決算期, 定期株主總會關係, 配當金交付株主確定日, 公告揭載新聞, 株式名義改書關係, 上場證券去來所 및 本社所在地를 기재하고 있다.

이 報告書의 分量은 12페이지이다.

(3) General Electric Co.의 1977年의 Annual Repor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財務上의 要點(financial highlights): 總收益, 보통주當 純利益, 短長期借入金, 株主의 持分 및 產業別·地域別의 營業活動의 결과 등을 2事業年度에 比較해서 表示하고 있다. 美國의 年次報告書에서 대단히 강조되는 것이 이 "財務上의 要點"의 表示이다. 그 이유는 "사려깊은 平均的 投資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會長의 논평: 경영자의 基本目標는 利益과 配當의 높은 成長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것과 이와 관계되는 項目에 대한 것을 數字로 表示하고, 成長戰略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GE종업원의 生產性, 인력개발, 美國經濟 및 世界經濟의 전망 등에 관한 意見을 表示하고 있다.

③ 消費財와 用役: 5事業年度의 消費財와 用役의 收益과 純利益을 表示하고 이들의 生產設備, 消費財인 T.V. 수상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성능 및 특징에 관한 설명을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生產財와 部品: 5事業年度의 총수익과 순이익을 표시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품의 성능과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다.

⑤ 動力事業關係: 5事業年度의 총수익과 순이익을 표시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가스터빈, 증기터빈 및 핵시설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⑥ 技術部와 材料: 5事業年度의 총수익과 순이익을 표시하고 技術部가 收益에 공헌한 정도, 항공엔진 등에 관한 것을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⑦ Utah International社: GE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自然自源 즉 석탄 등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사진을 첨부하여 5事業年度의 수익과 순이익을 표시하고 있다.

⑧ 海外子會社: 南美, 유럽 등 해외에 주소를 둔 子會社의 5事業年度의 수익과 순이익 및 이들의 영업활동상황을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⑨ 硏究와 開發: GE의 1977會計年度 中 연구비 총지출액은 10억 달러이고, 이 중 464百萬달러는 會社自體에서 충당하고 692백만 달러는 美國政府當局과의 계약에 의해서 충당되었다. 그리고 硏究와 開發의 進行狀況 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⑩ 理事會: 20명의 理事의 신상명세서와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사진을 첨부하여 기재하고 있다.

⑪ GE 종업원: 고용정책, 개방승진제도, 임금과 복리, 교육보조금 및 직업안정과 건강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⑫ 經營層: 124명의 집행간부의 명칭과 經營組織圖를 나타내고 있다.

⑬ 企業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重要爭點에 대한 GE의 精神 : 勞動者 1人當 시설투자의 比較, 投資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의 변경의 필요성, 海外所得에 대한 二重과세의 제거,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 인플레이션의 영향, 연구비와 개발비 및 會計原則의 發展등에 대한 GE의 견해를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것 중 연구개발비와 會計原則에 대한 GE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

美國은 企業投資가 약화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술개발에서도 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GNP에 대한 R&D의 지출의 감소를 各國別로 비교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GNP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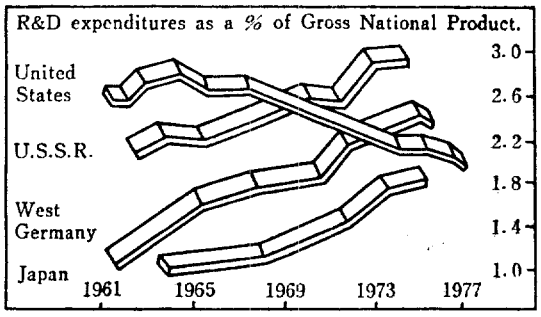

연구개발비의 상대적 감소는 國際經濟市場에서 서독과 일본의 제품이 우위를 점유하게 되었고, 미국의 國際特許權의 출원이 줄게 되었으며, 서독·일본 등의 外國의 국제특허권 출원은 과거 10년간에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會計原則의 發展에 대한 GE의 견해

GE는 會計原則의 發展은 民間機構(例,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⑭ 財務諸表 : Form 10—K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

⑮ 會計方針과 註釋 : Form 10—K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⑯ 產業別 地域別 情報 : Form 10—K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

⑰ 10年間의 要約 : 收益, 營業利益, 配當金, 流動資產, 流動負債, 運轉資本, 長短期借入金, 株主持分, 주요 생산시설, 減價償却費 및 從業員 狀況 등을 10年間을 年度別로 비교해서 작성하고 있다. 이 10년간의 要約貸借對照表의 작성은 뉴욕증권시장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⑱ 其他 情報 : 이 年次報告書의 財務情報는 代替原價情報를 除外하고는 Form 10—K와

一致하고 또 어떤 정보는 그것 보다 많은 것을 表示하고 이들 資料는 다음의 주소로 연락하면 무료로 提供한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 Investor Relations, General Electric Company, Fairfield, Connecticut 06431.

VI. 營業報告書의 改善方向

韓國의 營業報告書의 實態와 日本·美國의 營業報告書에 대한 최근 동향 및 外國의 事例를 살펴 보았다.

韓國의 營業報告書는 日本·美國의 經營報告書와 比較하여 볼 때 公示의 方法·節次와 報告書上의 정보내용의 不實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韓國의 영업보고서는 상대적으로 質的 特性이 적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의 營業報告書의 改善方向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公示方法의 擴充

公示方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商法의 改正이 先行되어야 한다.

1) 商法 第448條의 제①항과 제②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보완의 方向은 비치장소를 분명히 할 것과 비치하지 않았을 때, 民事·刑事上의 責任을 가한다는 취지를 삽입하여야 하며 그리고 費用을 支給하고 書類의 등본이나 초본을 얻는다는 것을 "無料"라는 것으로 改正하여야 한다. 비치장소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本店 뿐만 아니라 주요지점에도 비치하여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2) 商法 第449條의 제②항도 보완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만 新聞에 公告할 것이 아니라 損益計算書도 함께 公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는 완전히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公告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決算書類를 日本의 商法改正試案과 같이 商業登記所에 등기하여 公示하는 方法도 강구하여야 한다.

2. 營業報告書上의 情報의 質向上

1) 財務諸表는 比較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株式會社의 計算書類 등에 관한 規定"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때의 財務諸表는 總計定元帳의 計定科目대로 作成할 것이 아니라, 計定科目의 要約과 金額의 요약을 한 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 會計方針과 註釋事項을 財務諸表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회계방침과 주석사항을 강조하게 되면 부속명세서는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재무재표의 종류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財產目錄은 삭제하고 대신에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財務諸表가 주요 재무재표로 되어야 한다. 이것도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規則"에서 말하는 "財務狀態變動表"보다는 "現金資金移動狀況表"가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4) 商法上의 營業報告書에 최소한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열거하여 두어야 한다.